

X 파일 사건 보도를 지켜보며

박 형 상
변 호 사

I. 들어가며

최근 이상호 MBC 기자가 입수해 공개한 일명 'X 파일'로 인해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997년, 국내 굴지의 기업 책임자와 거대 언론사 사주가 나눈 이야기들이 담긴 도청테이프는 연일 모든 언론매체를 뜨겁게 달구었다.

X 파일 사건은 정치·사회적으로 다양한 파장을 만들어 내며 번져나갔다. X 파일 보도 초기에는 도청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일부 언론들이 도청 자체의 불법성을 강력하게 거론하면서부터 논의가 양분되기 시작했다. 이 논의는 과연 도청테이프를 증거로 삼아 도청테이프에 언급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와 인격권의 보호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또한 초유의 국가정

보원 압수수색, 도청 특별법 혹은 특검법 논란,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검사 실명 공개 논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휴대전화 도청 가능 발언 등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짚어 볼 점이 있다. X 파일을 둘러싼 불법도청 범리논쟁 또는 정치권의 연쇄반응은 논외로 하고 언론보도 자체를 기준삼아 살펴보는 이야기다. 과거 그 어느 사건보다 언론이 깊숙이 개입한 X 파일 사건에서, 과연 우리 언론이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논의,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한 고급 정보를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했나는 질문에 쉽게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공인의 인격권 보호 간의 충돌을 다루면서도 정작 이에 관한 진지한 접근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쉽게 풀

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번 X 파일 사건에 대한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결정에 관한 '법리적인 측면'¹⁾ 보다는 위 사건개요를 소개하면서 언론매체중심의 '미디어 비평'이라는 측면 이른바 최장집교수사건, 소설가 장정일사건, 만화가 이현세 사건등도 법리적 측면과는 별도로 미디어비평 측면에서에서 언론보도 관행의 제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가처분신청사건의 판단개요

먼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내린 '2005카합1743호, 방송금지가처분사건 2005. 7. 21.자 결정'부터 살펴보자.

'신청인 - 홍석현·이학수, 피신청인 -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1) 이 사건은 피신청인의 이익신청에 따라 2005. 9.경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다.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청구사건에 관한 최근의 판례 기준으로는 '대법원 2005.1.17.자 2003마1477결정'을 들 수 있다.

최문순'을 당사자로 삼은 위 신청 사건의 결정주문은 다음과 같다.

〈주 문〉

1.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내용에 관련된 사항을 아나운서, 기자의 육성이나 자료, 화면, 자막 등을 이용하여 (1) 별지목록 기재 테이프의 원음을 직접 방송하거나 (2) 별지목록 기재 테이프에 나타난 대화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3) 별지목록 기재 테이프에 나타난 실명을 직접 거론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5. 7. 21. 저녁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이나 그에 따른 후속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광고하거나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만약,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을 각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그 위반한 행위 1건에 대하여 각 금 5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들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별 지〉

"지난 1997년 대선직전 삼성인사가 일부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나눈 대화라며 불법도청테이프를 매입한 것을 기초로 한 일체의 보도내용"

그런데 위 가처분사건에서 신청

인들이 구한 원래의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다.

〈신청취지〉(신청인)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내용에 관련된 사항을 저녁 9시 '뉴스데스크' 등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광고하거나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각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 위반한 행위 1건에 대하여 각 금 30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결국 위 남부지원의 결정내용은 신청인들에 대해 '일부인용, 일부기각'을 내린 셈인바, 피신청인에게도 그 보도를 전면봉쇄시킨 것은 아니었기에 일정부분 숨통을 그나마 터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가처분신청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그런데 위 사건 신청일이 2005. 7. 21.자이고 그 결정 역시 그 신청당일에 곧바로 내려졌는바,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진 셈이다. 신청인은 그 신청당일의 조간신문, 즉 조선일보 2005. 7. 21.자 기사들을 그 소명자료로 삼았다. 조선일보의 신청일자 조간지면에서 "안

기부, YS 정부 때 비밀조직 운영, 정·재·언 인사들 대화 불법도청, '모 재벌·중앙일간지 고위층, 대선자금 지원논의' 담긴 MBC가 최근 확보한 테이프도 안기부 작품 드러나"라고 1면 톱으로 대서특필하였다.

피신청인 MBC는 위 신청사건에 상관없이 그 같은날 저녁 오후 7시 무렵에 '홍석현 테이프 입수에서 오늘까지'라는 제목으로 경위 보도하였으며, 그 결정이 내려진 후 2005. 7. 21. 오후 9시 뉴스데스크 시간에 "도청진상조사"라는 제목으로 국가정보원의 미립팀에 관한 상세한 보도를 하였다. MBC는 위 1심 결정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 그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했는바, 그 이의신청서에서 "조선일보와 KBS 등에 의하여 이미 못볼 터지듯 구체적 보도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유독 피신청인에게만 이견 결정으로 말미암아 구체적 보도를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MBC는 이미 2005. 7. 초순경부터 "MBC 권·경·언 유착 이상호 X 파일 보도 불가 논란 - MBC 거대자본에 굴복하나"라는 외부 비판을 받고 있었다.²⁾

여기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2) 미디어오늘 2005. 7. 6.자, 기타 보도 초기시점의 사정에 관하여는 주간조선 2005. 8. 8.자 '두 기자, 한국을 뒤흔들다' 참조.

또다른 의문점이 생긴다. 위 신청 당일의 2005. 7. 21.자 조선일보 조간이 이미 대서특필했으며, KBS와 동아일보 등이 그 독자적인 보도로 앞서갔던 상태였기에 신청인들이 그 가처분신청을 구할 바에야 '조선·동아 등 주요일간지 및 KBS 등에 대한 속보금지'까지 포함시켜야 그나마 합당했던 것 아닐까. 바꾸어 말하건대 여타 주요언론에 의하여 공론화된 상태에서 MBC만을 겨냥한 방송보도금지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한 것 아닐까.

3. 이른바 사건의 본질론에 대하여

주요 신문·방송매체들 간에 이른바 집단적 공방전이 이루어졌는데, 사건의 본질을 놓고서 "사생활 보호, 인격권, 불법도청" 쪽으

로 파악한 집단³⁾과 "알 권리 및 보도의 공익성, 정·재·언의 돈과 권력의 결탁" 쪽으로 본 집단⁴⁾으로 양분되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의 2005. 7. 25.자 성명은 '불법도청과 불법 대선자금 제공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그 중간적 입장이었다.⁵⁾

문화일보 2005. 7. 28.자는 "X 파일 최대문제는 정경유착 - 45.8%, 도청행위 잘못 - 37%, 검찰수사해야 - 77.9%"라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70%가 도청자료공개를 원했다는 여론조사내용이 발표되었으나, 그것은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국민들의 진정한 뜻을 알자면 당신들 개개인이 그 도청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그 공개를 용인할 것인지를 함께 묻지 않으면 국민의 올바른 판단결과를 조사한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었다.⁶⁾

4. 전문가조언부분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의 '증거사용금지'에도 불구하고 'X 파일 도청테이프와 거기에 실린 또다른 범죄내용, 그에 관한 취재보도 행위를 우리사회가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를 몇 마디 말로 단언하기는 쉽지 아니하다. 형사증거법과 언론법적 쟁점에 정치공학까지 겹쳐진 이번 일에는 어떤 전문가라도 상당한 강박감을 느낄만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이라도 국민 전체를 위한 중대한 공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조화로운 해결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신중하게 숙고해야 할 난제임에 틀림없어 보인다.⁷⁾⁸⁾

한편 이번 사건보도에서 대부분 언론이 여러 전문가와 외국사례

3) 중앙일보 2005. 7. 28.자. 윤평중, '감시사회와 민주주의 위기'; 중앙일보 2005. 8. 10.자. 송호근, '참여연대의 적은 불법도청세력'; 문화일보 2005. 8. 9.자. 박성조, '프라이버시와 민주주의 가치'.

4) 한겨레 2005. 8. 3.자. 안병욱, '테이프 공개가 해법이다'; 경향신문 2005. 8. 11.자. '정·재·언 유착 간데없고 정쟁만'; 한겨레 2005. 8. 26.자. 도정일, '사회는 어느때 실패하는가-도청사건에서 경악한 것은 권력과 돈의 결탁부분'.

5) 조선일보 2005. 7. 22.자. '불법도청과 불법적 대선자금 지원논의'라는 사설은 '도청문제는 도청문제대로 또 도청테이프 속의 대화내용은 그것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문화일보 2005. 8. 8.자. 박용상 변호사, '도청자료 공개 특별법은 위헌이다'.

7) 개인적 의견으로는 '그대로 전부 공개할 수도 없겠으며, 또한 무작정 전부 폐기해버려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도청행위 수사와 도청내용 수사는 분리해야 할 차원이며,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증거사용금지)는 당해사건의 피고인을 위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검찰로서는 위 4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증거를 따로 확보할 수 있다면 현행법 체제 내에서도 그 독자적 판단에 따른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 후 재판절차에서 우리 헌법·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법관이 제시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기준 및 한계에 관한 중구적 판단에 승복하면 족할 일일 것이다. 즉 이번 사건을 디딤돌삼아 우리 헌법 및 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따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기준과 한계를 얻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입법적 보완의 계기도 될 것이다.

8) 박종보 헌법학 교수는 중앙일보 2005. 8. 8.자, '도청행위 수사와 도청내용 수사'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미국에서도 찬반논쟁이

를 내세우고 있었으나, ‘형사소송법·증거법 분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전문가’를 정작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지 일부 기자들의 귀동냥식 식견에 의하여 ‘미국의 독수과실의 원칙(독수독과의 원칙)’만 소개되었다.⁹⁾ 그리하여 ‘미국식 자동적·의무적 증거배제법칙’만 소개되었을 뿐 한국에서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현황은 물론이고, ‘영국·캐나다의 재량적 배제법칙’이나, ‘일본의 상대적 배제법칙’은 아예 언급되지 아니하였다.¹⁰⁾ 우리나라 대법원이 “영장없이 수색·압수·검증한 증거에 대해서도, 즉 위법한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취득한

증거물이라도 조작된 것이 아닌 한 그 증거가치가 여전하다”라는 이른바 ‘성질·형상불변론’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일절 소개되지 않았다.¹¹⁾

즉, 한국법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를 ‘자백관련부분’과 ‘기타 증거물관련부분’으로 구별하고 있음에도 단지 미국식 독수과실의 원칙을 위주로 하여 비법률전문가들끼리의 제반 논쟁이 이루어졌다.¹²⁾

한국대법원의 ‘성질·형상불변론’ 자체¹³⁾를 객관적으로 소개해 주는 것 자체는 ‘성질·형상불변론’의 포기(즉, 판례변경)를 통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확대적용’을 주장하는 비판적 개선론과도 또 다른 차원이라 할 것이다. 필자도 개인적으로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살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원칙적 확대적용을 주장하는 바이지만, 다만 ‘국기문란 수준의 공익침해적 중대범죄’라면 그 예외적 사정을 따로 취급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쪽이다.¹⁴⁾

여하튼 이번 사건에 관한 한국 언론의 보도행태는 ‘쟁점분야별 심층전문가 현황’을 상시 파악해 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개인적 친분과 연고에 의지해서는 기껏 ‘구색갖추기용, 바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하여 기소하는 것도 가능하고, 수사의 단서로 삼는 것도 허용된다. 불법감청내용을 근거로 법원이 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주 법원판례도 있다. 그러므로 검찰이 도청내용을 수사할 수 없다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미국법을 인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9) 동아일보 2005. 8. 6자 사실, ‘국가기관 도청, 독수의 뿌리를 뽑자’.

10) 법률신문 2004. 12. 9자. 조국,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조국(200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서울: 박영사.

11) 대법원 1987. 6. 23. 87도705,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도932호등 판결. 우리 대법원은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른바 성질·형상불변론을 말하였다.

12) 만약 어떤 법률가가 ‘성질·형상불변론’ 판례를 의도적으로 숨긴 채 미국식 법적 원칙론만을 고집한다면 사악하기조차 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또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 여부를 도외시 한 채 ‘중대한 인권침해’, ‘공익적 알 권리’차원에 머물고만 일부 법률가들의 진부한 논의 역시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었다.

13) 다음 판결들은 이른바 성질·형상불변론의 연장선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도3161판결은 ‘사인에 의하여 촬영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부여조건’에 관하여 “사인에 의하여 촬영된 비디오테이프가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첫째, 비디오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사본일 경우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소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그 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13979판결은 ‘보험사의 몰래카메라 촬영’과 관련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증거수집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당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 방법의 보충성 등을 참작할 때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하여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내에 속하므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4) 그 도청내용에 ‘국가원수에 대한 암살모의나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조직적 매수행위, 대선·총선방해 행위’ 등이 들어있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 그럼에도 그냥 폐기해버려야 하는가?

람잡이용 전문가'를 급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X 파일 보도에서는 '한국적 상황과 법적기준에 중립적인 형사법 전문가 조언'이 없거나 크게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전문가 물색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 언론사가 현재 운용중인 '섭외담당 전문가' 제도를 전향적으로 일반화시킬 만하다.

5.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일부 언론에서는 절차적 정의론까지 등장하였다.¹⁵⁾ 그러나 우리 언론에 등장했던 그 간의 사례, 즉 이른바 양길승 청와대부속실장 몰카사건을 비롯하여 '몰래카메라, 지문생체감식기, 함정수사, 지문날인, DNA 채증,

강제채뇨, 약물검사, 거짓말탐지기, 정맥인식기' 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제대로 기울여오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논의를 제기하기에는 그 설득력에 의문이 간다 할 것이다.¹⁶⁾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기문란 수준의 중대범죄자에게 형제'¹⁷⁾를 주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다고 여긴다. 한편 '성행위를 해서라도 성매매 증거확보하라'라는 대검의 '함정단속지침' 논란¹⁸⁾이나 '경남교육청-교내사망 축소은폐지침' 논란¹⁹⁾ 등을 1회성 단발보도로 끝냈었던 것이 우리 언론보도의 현실이다.²⁰⁾

예컨대 DNA법에 의한 강제채혈이 미국에서는 위헌인 반면에 영국에서는 합헌인바, 우리 언론도 이런 사정에 대한 성찰적 안목이 있어야 할 것이다.

6. 이른바 떡값검사의 명단 공개에 대하여

'떡값의혹' 검사의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는 대세 속에서도 '이를 그대로 옮겨 전파 보도한 언론매체의 실명공개태도'를 두고서는 찬반²¹⁾이 엇갈렸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우리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익명보도의 원칙을 우선 존중하되 그 객관적 수사진척 또는 자료확보 상황에 맞추어 특정·공개하여도 뒤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쪽이나,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전형적 공인이라 할 검사의 공적 직무의 엄결성 문제가 이미 공론화되어 의심받기에 이른 만큼 노회찬 의원의 공개적 발표에 관련하여 우리 언론이 그 당사자 검사에 대한 직접

15) 문화일보 2005. 8. 29.자. 홍정기, '절차적 정의가 정법이다'. 그러나 한국 헌법은 미국 헌법처럼 '적법절차조항'을 직접 두고 있지 아니한바 하위실정법 해석적용에서 미국과는 일정부분 편차가 생긴다.

16) 이번 X파일의 불법도청사건과 지난번 양길승 부속실장 몰카촬영사건은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 이른바 양길승 몰래카메라 사건과 이번 X 파일 불법테이프 사건의 본질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 차이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절차적 정의론이 더욱더 적실성 있게 될 것이다.

17) 조국 교수는 "특히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범죄인이 누리는 형제가 너무 크다면 그 증거능력을 자동적으로 배제시키는 경우 형사정의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조장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재량없는 배제법칙'보다는 '개별화된 정의'를 주장하는데, 그 역시 '성질·형상불변론' 자체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18) 동아일보 2005. 6. 7.자.

19) 경향신문 2005. 4. 30.자.

20) 기타사례 - 쓰레기투기방지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설치를 비롯하여,

동아일보 2003. 8. 1.자. '양길승 부속실장 청구술자리 몰카촬영, 누가 찍었을까 의혹 커져'.

조선일보 2003. 10. 27.자. '미8군 카지노서 도박 중인 의원님 - 송모 의원으로 추정되는 남자몰카사진'.

서울신문 2004. 2. 28.자. '선관위 정당행사에 녹음기 설치 물의'.

경향신문 2004. 2. 12.자. '나이롱 교통사고 환자 적발목적 몰카정당판결 - 보험사 파파라치 용인 논란'.

21) 동아일보 2005. 8. 24.자. '도청내용 공개는 관음증 부추기는 일'.

미디어오늘 2005. 8. 24.자. '떡값검사 실명보도 문제없다'.

적 취재를 통한 반론·해명기회 등을 배려해주면 그 보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7. 중앙일보와 삼성측의 사과표명에 대하여

중앙일보 2005. 7. 25.자는 “다시 한 번 뼈를 깎는 자기반성 하겠습니다”라는 사실을, 중앙일보 2005. 8. 5.자는 “중앙일보 기자들은 다점합니다(중앙일보 기자일동)”라는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일보의 ‘이재경 교수의 움부즈맨 칼럼’은 “중앙일보의 반성문에는 치열한 자기반성이 없었다”라고 지적하였다.²²⁾ 미국 뉴욕타임스의 반성내용 및 방식과 구체적으로 비교·비판한 위 칼럼은 유념해 새겨들 만하다. 한편 삼성그룹은 ‘삼성그룹 임직원 일동’ 명의로 대국민 사과²³⁾를 했는바, 여기에 대

해 “개인 홍석현과 개인 이학수가 그 신청인임에도 그들을 대신하여 중앙일보와 삼성그룹이 왜 나서느냐”는 반론²⁴⁾이 있었다. 그런데 중앙일보의 사과문·사과사설(또 그 시점의 MBC의 돈받은 기자 등 징계사과문, 알몸공연사고에 대한 사과문 사례, 아동학대 수경사 미담 오보 사건에 관한 방송 3사 사과문 등)을 지켜보노라면 ‘언론사를 상대로 사죄광고문 게재청구를 요구하는 것은 언론사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사죄광고문 게재청구’를 전면봉쇄하고 있는 우리 헌법재판소 태도²⁵⁾ 역시 이제는 달리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²⁶⁾

8. 취재기법 및 윤리측면에 대하여

MBC의 이상호 기자가 취재원

에게서 그 테이프를 취득한 행위에 대해, 즉 ‘취재윤리 및 취재경위의 정당성’을 놓고도 논란이 생겼다.²⁷⁾ 그러나 이 부분은 이상호 기자가 불법도청을 직접 감행한 당사자도 아니기에 통상적·의례적 수준의 사례금 정도로 그 취재자료를 구했다면²⁸⁾ 비교형량론에 의하더라도 문제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가정적 상황이지만 이번 MBC의 취재방식 및 보도방법이 ‘국가정보원 쪽의 내부고발자’²⁹⁾에 의지한 ‘고발보도형식’을 취했다라면 이번 사건은 ‘사생활 보호와 언론의 자유’와 아울러 ‘취재원 보호 및 압수·수색의 문제와 언론의 자유’의 상관관계 논쟁으로도 옮겨갈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에게도 미국의 ‘리크게이트’ 사례처럼 취재원 보호권 여부 및 기자의 증거거부의 문제도 생겼을지 모른다.³⁰⁾

22) 중앙일보 2005. 8. 19.자. 움부즈맨 칼럼

23) 한겨레 2005. 7. 26.자.

24) 한겨레 2005. 7. 27.자. 사설.

25)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 160호.

26) 일본 NHK의 사죄사례와 일본 최고재판소의 태도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27) 미디어오늘 2005. 8. 3.자. ‘이상호 기자 소환은 본말전도’; 2005. 8. 10.자. ‘현직기자 직무상 취재행위 조사 자체가 이례적’. 기자협회보 2005. 8. 31.자. 설원태, ‘취재기법과 언론윤리’.

28) 이점에 관련하여 미디어오늘 2005. 8. 3.자는 ‘박씨, 공개해야 한다는 확신에 대가없이 체보 - 박씨 변호인 주장’이라고, 중앙일보 2005. 7. 29.자는 ‘MBC 박인회 씨에게 비행기표 제공’이라고 보도하였다.

29) 경향신문 2005. 7. 27.자. ‘최신 X 파일을 얻으려면’에서 고승덕 변호사는 “내부자 고발을 장려하고 공익을 위하여 공표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0) 우리 헌행 소송법체제(형사소송법 제149조, 민사소송법 제315조)에서는 기자의 증거거부권 자체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구 언론기본법 입법선례에 비추어 입법론적으로 보완해 볼만하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315조 2호의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의지하여 기자의 증거거부권을 입론하는 견해도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은 언론인의 증거거부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9.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대하여

한편 이 사건 가처분신청서에서도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바,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관련한 여러 지적과 더불어 다른 한편에서는 국정원의 미래나 국정원 안보수사의 노하우를 걱정하기도 하였다.³¹⁾ 한편 우리 대법원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1항의 비밀이라 함은 ...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직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인데, 그 비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의 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한바 있다.³²⁾

10. 특별법·특검법 논란에 대하여

‘여당의 특별법 원칙’과 ‘야당의 특검법원칙’을 놓고 그 위헌논란이 생겼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구체적인 법안내용이 아직 제시·상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찬반논란은 무의미한 측면이 있다. 거기서 전제되는 ‘공개’ 개념의 구체적 기준과 ‘공개의 한계(예외)’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도 아니한 상태이기에 아직은 전면반대하거나 전면찬성하기에는 이르다 할 것이다. 결국 ‘테이프 처리에 관한 특별법 또는 특검법’ 정도가 되겠는데, ‘그 처리의 기준과 한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그 실질적 관건이 될 것이다.

III. 나오며

- 몇 가지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이제 필자의 관전기를 정리해 본다.³³⁾

첫째, ‘언론사 내부 시스템’ 부분이다. MBC가 먼저 취재했다지

만 막상 조선일보가 터뜨리고 말았다. 쫓기는 듯 서두르다 엉거주춤 한 MBC 태도를 보면, 과연 기획·취재·보도단계에 걸쳐 일관성있는 사전 검토 작업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다. 복잡다단한 사회적 이해관계 앞에서 ‘어깨너머 결눈질’이나 ‘나홀로 감투정신’, ‘한탕식 한건주의’로는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사내 상근변호사’ 제도 등을 활용하여 예상되는 상황전반을 체크해 두어야했다. 가처분신청을 아예 앞지르거나, 가처분인용이라는 법원결정에 대한 우회로를 마련해두거나 ‘언론사 간 공조체제’도 생각해 볼만했다. 그 보도방법에 있어서도 ‘제2·3취재원’을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거나, ‘내부자 고발형식’을 강구해 볼만했으며, ‘MBC의 입장’이라는 공식적·공세적 발표문도 미리 준비해 둘만 했다.³⁴⁾

둘째 ‘심층적 탐사보도’ 부분이다. 기실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의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면 톱 대서특필³⁵⁾이

31) 중앙일보 2005. 8. 2.자. 제성호,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나야’.

한겨레 2005. 8. 12.자. 한상희, ‘국정원 개혁의 해법’.

문화일보 2005. 8. 18.자. 김상겸, ‘불법도청과 국가정보원의 미래’.

동아일보 2005. 9. 1.자. 이강혁, ‘국정원 안보수사 노하우 살려야 한다’.

32) 대법원 2003. 11. 28. 2003도5547.판결.

33) 경향신문 2005. 8. 29.자. 미디어비평, 박형상, ‘X파일사건 관전평’.

34) 그레도 기자와 언론으로서 제 ‘밥값’을 했다고 본다. 부분적으로 깔끔치 못했어도 이번 ‘역할’이 아니었으면 ‘저 야비한 국가 폭력과 막가파식 재벌의 횡포를 어찌 알 수 있었으리’라는 것이 개인적 의견이다.

35) 동아일보 2002. 1. 25.자, ‘국정원, 첨단장비 50대 투입, 요인 휴대전화 광범위 도청’.

한 두 번이 아니었다.³⁶⁾ 그럼에도 매번 일과성 소나기이자 용두사미 식이었다. 후속보도는 일절 없었고 어떤 기자도 확인추적하지 아니했다. “정통부 장관이 거짓말했다”고 질책하기에 앞서 취재기자들 스스로도 머쓱해야 할 일이다. 출입처 보도자료를 베껴 쓰거나 정부발표문을 옮기기에 바빴던 그간의 직업적 타성을 반성해야한다. 차제에 탐사보도팀을 위한 ‘사내 아카이브(자료지원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고발기자나 시사 PD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지금의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

셋째, ‘언론의 정파성과 조급성의 폐해’ 부분이다. ‘외부칼럼진 구성 및 필자동원방법, 사실보도와 논평보도의 혼재’ 속에서 한국 언론의 정파성이 날로 짙어만 가고 있다. 자사지면을 ‘사회적 공론장’으로 제공할 의사가 전혀 없어보인다. ‘관계자, 고위관계자, 당국자, 핵심당국자, 소식통’을 빙

자한 무차별적 익명보도의 경향도 이런 정파적 공세의 연장선에 놓여있다. 동아일보 2005. 8. 5.자는 “검찰 ‘내용수사 안 한다’ 확정”이라고 1면에서 대서특필보도하고 있으나 정작 그 인용된 취재원이라야 고작 ‘검찰, 검찰고위간부, 검찰관계자’ 등에 불과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말이 다 달라서야’라는 조선일보 2005. 7. 27.자 사설도 너무 성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사회라면 적어도 사건초기에 있어서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기본시각은 서로 다를 수도 있겠는바, 원칙정립 후 집행단계에서의 혼선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넷째, 공인과 사생활의 보도한계이다. 평소 ‘공인에 관한 알 권리의 중요성’이나 ‘사회적 공기로써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던 언론인이나 관련학자들이 이번 X 파일 논쟁과 관련하여 그 견해

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아니한 점도 아쉬운 일이다. 아마 정파적 언론으로부터 그 인터뷰 자체를 요청받지 못했을 것으로도 짐작간다. 이번 X 파일 사건은 우리 사회가 ‘공인의 사생활 한계’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논의를 계속해야 할 필요성³⁷⁾을 말해준다. 조선일보는 “2005년도 미국의 폴리처상(탐사취재부분)은 ‘전 주지사의 30년 전 성학대 사실’을 파헤친 무명주간지 기자가 수상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일부언론의 태도를 보면 오히려 한국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 욕구가 한국이 본받고 있는 미국의 프라이버시보호 욕구보다 훨씬 더 높게 부풀려져있다고 여겨질 정도이다. 공인 및 공적관심사에 연루된 사생활 보도를 일절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공동체적 결단이라거나 법적기준이라고는 추호도 여기지 않는다.³⁸⁾ □

36) 동아일보 뉴스플러스 1998. 5. 21.자. ‘별거벗은 사생활 도청천국’.

조선일보 1998. 10. 17.자. 김대중, ‘대형이 너를 엿듣고 있다’.

조선일보 2001. 9. 3.자. 김주덕, ‘도청공화국’.

조선일보 2001. 12. 3.자. 사회면 “첫... 도·감청 공포확산, 김경간부도 타인 휴대전화 사용, 대기업 회장 ‘도청노이로제’ 호소”

37) 조선일보 2005. 7. 23.자. 사설, ‘법으로 막아서는 안 될 공익보도의 원칙’.

경향신문 2005. 7. 26.자. 이대근, ‘한국언론은 죽었는가’.

38) 박경신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의 법제를 비교검토한 후 “한 사회가 상충하는 타법익에 비교하여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얼마나 보호하여 줄 것인가는 순수하게 소셜엔지니어링의 문제이며 공공의 결단, 국민의 결단의 문제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경신(2005), 명예·초상·프라이버시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헌법실무연구」 제5권.}